KWDI 이슈페이퍼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일** : 2020. 08. 31.

수행과제명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L) 과제책임자 조선주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09 / E-mail: sjcho@kwdimail.re.kr)

2019년, 한국의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초로

-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10년에 대해 형식적 제도와 현실적 운영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을 인식하고, 그 원인과 대안을 찾아 성인지예산제도가 정부의 주요 재정제도이면서 동시에 성불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서 나아가기 위한 국면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지난 10년간 시행해 온 한국형 성인지예산제도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 둘째,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성인지예산제도의 설계 및 제도의 운영행태를 평가하며, 셋째, 제도 시행의 주요 이해 관계자인 행정부, 입법부, 전문가 집단에 대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경험과 그로 인한 변화, 발전방안들을 조사하여 다각도의 입체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함

<표> 성인지예산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정책	과제	정책과제(세부과제)					
	법적 기	반 보강	•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의 방향에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내용을 수록. 근거규정 입법					
조직적 기반 보강			 기획재정부 또는 여성가족부 내 성인지예산안 심사·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여성가족부 성인지예산제도 지원운영과(가칭) 신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기능 확대·강화 디브레인과 연계된 별도의 성인지예·결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예산편성 및	Į 요구적극반S	영, 환류강화	개별사업	사업군				
	편성	①사전성별영향평가 ¹⁾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분석의 질 제고, 예산편성 전에 미 완료 시 네가티브인센티브 제공					
선행		②예산기조분석	•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재정운용의 방향 점검, 성평등 현황 점검					
		③젠더요구분석	• 해당 사업 관련 사회구조적인 성불평등 현황과 정책 수요자의 요구 분석	-				
		④성과목표 설정	• 성과목표(성평등 지표) 유형화 및 합리적 지표 설정					
현행	집행	⑤재원배분	-					
	십엥	⑥예산수혜분석	• 예산수혜분석·평가방법론 체계화, 교육자료 배포					

	정책	과제	정책과제(세부과제)				
예산편성 및	! 요구적극반영	영, 환류강화	개별사업	사업군			
	결산보고	⑦사후성별영향평가	• 성인지결산서 상 성평등 목표 달성 및 평가결과 를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 인센티브제 도입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 후 성과목표달성률이 저조한 사업군에 대해 「성별			
후행	및 검사	⑧젠더감사	• 감사원의 성인지결산 분석 기능 강화	영향평가법」에 따른 특정 성별영향평가 ²¹ 실시			
		⑨지출분석(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핵심 국가정책의성평등 효과 분석 강화			
	법정서류의	개선, 보강	 1) 성인지예산서 제출 시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성인지예산서에는 리스트만 제출하고 성별영향평가보고서 첨부하여 제출 또는 2) 성과계획서에 성평등 목표를 추가하고, 관련 있는 사업만 별도 취합하여 제출 1), 2)안 중 선택 성인지결산서 제출 시 당해연도 대상사업에 대해 성평등 효과분석보고서 제출 				
국회	의 예산안 심역	의·확정 기능 개선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성인지예·결산 전담팀 운영, 별도의 검토보고서 생성 • 국회예산정책처 성인지예·결산 분석보고서 보강				

¹⁾ ①-⑨의 분류는 OECD(2017: p.7), 이택면(2017: p.55)을 참고함

1. 배경 및 문제점

-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의 전 분야에 걸친 재정활동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국가가 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성평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재정제도로, 「국가재정법」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 이러한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시행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포용적 국가와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며, 2019년 현재 성인지예산제도는 '성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제도로 그 의의가 있음
-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10년에 대해 제도의 정착과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는 일련의 긍정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국가 전반에 걸친 성 불평등 개선이 미비하므로 제도 시행 전략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 지난 10년 동안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 '성평등'한 재정제도로서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성인지예산서가 '분석서'인지 '예산서'인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즉 이해관계자마다 지향점이 다름
 - ▶ 형식적 제도와 현실적 운영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을 인식하고, 그 원인과 대안을 찾아 성인지예산제도가 정부의 주요 재정제도이면서 동시에 성불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서 나아가기 위한 국면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²⁾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별영향평가법, http://www.law.go.kr/법령/성별영향평가법 (인출일자: 2019.10.07.)

○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지난 10년간 시행해 온 한국형 성인지예산제도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 둘째,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성인지예산제도의 설계 및 제도의 운영행태를 평가하며, 셋째, 제도 시행의 주요 이해 관계자인 행정부, 입법부, 전문가 집단에 대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경험과 그로 인한 변화, 발전방안들을 조사하여 다각도의 입체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취지와 제도의 특징 분석

<표 1> 2010-2019회계연도 성인지예산제도의 시행경과와 특징

- 기획재정부의 각 연도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은 사업유형별 지침과 목별 지침, 기준 단가 등, 경비 산정 시 참고요금,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유형별 지침의 하나로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과 세부지침이 제시되어 있음
- '10년의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을 살펴보면 작성대상사은 ① 양성평등사업(■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08~'12) 추진 사업,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권익증진사업, 기타 법령·계획 등에 근거한 양성평등사업, * 남녀평등기본계획(노동부), 여성농어민육성종합계획(농식품부) 등)과 ② 성별영향 분석사업(양성평등사업을 제외한 일반예산 사업(기금 제외) 중 성별수혜자 분석이 가능한 사업) 이었고 (기획재정부, 2018b: 목차 pp.1-2), '11년에는 기금까지 확대(기획재정부 외, 2019: p.7)
- '19년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빈번함에 따라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인 직접목적 사업과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간적목적 사업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제시함(기획재정부 외, 2018a: pp.12, 47)
- '20년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대상사업이 변경되었고,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여성 폭력에 관한 사업)을 별도 표기하여 제출하도록 함
 - □ 성인지예산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 ㅇ (직접목적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등
 - ㅇ (간접목적 사업) 부처 성평등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사업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업 등
 - □ '20년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은 별도 표기하여 제출
 -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관한 모든 사업
 - 출처: 기획재정부(2019a; p.47)
- 세부지침은 각 연도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경되지만 아래의 '20년도 세부지침과 같이 큰 틀이 유지되고 있음
 - □ 성인지예산 작성부처는 (i) 성평등 목표, (ii) 사업 총괄표, (iii) 사업별 설명자료(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수혜분석 등 포함)를 작성
 - ㅇ (성평등 목표)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부처별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기술
 - o (사업 총괄표) 회계, 세부사업, '17년 및 '18년 예산현황 작성
 - * 성평등 목표 및 사업 총괄표는 해당부처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작성
 - ㅇ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내용 작성
 - * 사업별 설명자료는 해당부처 사업 담당부서에서 작성
 - □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18년도 예산요구시 일반적인 사업별 설명서와 별도로 성인지예산서를 제출 ㅇ dBrain 입력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을 표기
 -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이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인 경우, 세부사업과 내역사업 모두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으로 표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인지예산서 작성 세부지침」을 참고
 - * 출처: 기획재정부(2019a; p.47)
- 별도로 마련되어 각 부처에 배포되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세부지침에는 적용대상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예시, 성인지예산서의 작성방향 및 작성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작성지침, 성인지예산서 관련 규정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음(기획재정부, 2018b: pp.103-108)

예산서 작성 지침, 세부지침

-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은 각 부처의 작성 양식으로 부처의 기획재정담당관실과 각 사업별 담당자가 작성 하는 양식으로 구분(기획재정부 외, 2019: pp.73-78)
- '10년도에 1. 성평등 목표와 재정운용 방향, 2. 사업 총괄표, 3. 사업 설명서로 구성된 작성 양식(기획재정부, 2009a; pp.123-129)은 '20년도에는 대상사업 선정기준 변경에 따른 사업유형이 추가되는 등 아래와 같이 변화함

예산서 양식 (작성항목)

- 1. 성평등 목표
 - Ш
 - 0
- 2. 사업총괄표
- □ 사업별 현황
- 3. 사업별 설명자료
 - □ 사업명(일반회계/00특별회계/00기금)
 - □ 해당연도 예산안
 - □ 사업유형(성인지 사업유형,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여부,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 □ 사업목적
- □ 정책대상
- □ 사업내용(사업기간, 지원형태, 사업시행주체)
- □ 성평등 목표
- □ 성평등 기대효과
- □ 성별 수혜분석 3개년(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현황, 분석 결과)
- □ 해당연도 성과목표
- o 성과목표(지표) 산출 근거(측정산식 및 목표치 설정 근거, '18년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 기타)

부처별 사업 수

및 예산

- 부처별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 수와 예산 수가 갖는 의미는 직접목적 사업의 수와 분석을 통해 부처가 양성 평등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부처의 성평등 실현의 의지로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간접목적 사업 수와 예산은 부처가 예산사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범위를 의미하며, 해당 숫자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예산 사업의 성평등 효과 분석의 범위를 확대하여 분석대상 사업의 성별 수혜 격차를 조정하고, 성과목표 등을 점검하여 성별 수혜 격차를 완화하고 예산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부처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음

(단위: 개, 조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작성기관	29	34	34	34	42	42	43	42	41	33	1.4
대상사업	195	245	254	275	339	343	331	350	345	261	3.3
성인지예산	7.5	10.2	11.3	13.3	23.0	26.2	28.0	29.6	33.9	25.4	14.5
양평예산	(2.3)	(2.6)	3.2	4.1	10.7	18.8	19.8	4.9	6.6	9.1	16.5
	292.8	309.1	325.4	349.0	355.8	384.7	398.5	410.1	432.7	496.6	5.4

^{*}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2019: p.3)

국회 성인지 예산안/결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성인지예결산 심사내용

- 정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성인지예산서는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인 예비심사,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정부로 이송됨(국회예산정책처, 2017: p.76). 성인지예산서에 대한 심사는 대부분이 예비 심사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며 종합심사 및 본회의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음
- 그 과정에서의 심사내용을 범주화 해보면, 성인지예산서 작성 내용의 문제, 대상사업 선정 기준의 문제, 성인 지예산제도 운영의 문제³로 요약 가능. 이처럼 국회의 성인지예산안 심의는 예산안 심사라기보다는 제도의 운영, 개선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
- 그럼에도 그동안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정에서 나타난 많은 변화들이 국회의 지적사항에 기초하고 있음(김효주의, 2017: 연구요약 4쪽)

^{*} 출처: 기획재정부 외, 2019: pp.73-78

시민사회에서의 성인지예산 관련 활동	- 시민사회는 성인지예산제도가 시작하는데 있어 국민들의 공감대와 여론을 형성(차인순, 2009: p.168) 하는 등 큰 역할을 차지하였으며, '17년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 향상 조례를 재정하 였고(여성신문, 2017.11.29.), '18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결산제도 NGO 협력 사업 운영(장윤선 외, 2018: pp.109-121)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활동을 진행함. 하지만 중앙정부의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에는 크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감사원의 성인지 결산 검사	 감사원은 헌법 제99조와 국가재정법 제 60조 및 감사원법 제 21조 등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결과와 국가기관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록한 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감사원 보도자료, 2019.05.31.: p.1). 성인지결산서는 국가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감사원은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함. '10회계연도부터 '17회계연도까지의 성인지결산에 대한 감사원의 검사 내용을 살펴보면, 각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성인지결산서의 현황을 제시하고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수 및 예산 집행규모를 기준으로 상위 5개 부처를 구분하여 성평등 효과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여성과 남성의 수혜자 비율과 여성 및 남성관련 지출액 분석하여 제시함.⁴ 하지만 성인지결산의 합법성과 정확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성인지 결산서 기반 성평등 효과 분석	- 성인지결산서는 국가재정법 제57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로 성인지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됨. 이러한 성평등 효과분석은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이 성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성별격차가 어떻게 감소하였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음(기획재정부 외, 2018b: p.6) - 성과목표 달성현황은 '11회계연도 성과목표 달성률은 68.3%, '18회계연도 성과목표 달성률은 71.9%로 '11~'18회계연도의 평균 성과목표 달성률은 70.0% ⁵⁾ - 성인지결산서 작성 사업 중 성평등 개선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13년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공계전문기술 연수지원' 사업처럼 성과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자체평가를 통해 향후 적절한 개선방안을 모색한 사례, '14년의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경상보조-의료급여관리사' 사업처럼 사업의 목적 및 성평등 목표와 연계되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목표치로 적절한 성과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 '16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인력양성(R&D)-미래기초인인력역량개발' 등의 사업처럼 여성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의 여성유인 체계 강화, 여성 진입 확대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 수혜율을 제고한 사례 등이 있음 - 이를 범주화하면, 직접목적사업인 경우 직적목적사업의 예산액 확대, 여성사업 수 및 예산액 확대된 효과가 나타남. 간접목적사업의 경우 사업 내 성별 수요를 반영한 예산 배분 조정, 프로그램개선, 성과내용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음
성인지예산서 개요의 변화/내용의 변화	 각 부처에서 작성한 성인지예산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종합하여 국회에 제출. 제출된 성인지예산서의 개요에는 '의의', '전체 규모 및 전년도 예산과의 비교', '성인지예산 주요 사업 현황', '당해연도 예산안 작성의 특징' 등의 분석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19년도에는 예산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성별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기준이 제시되어 있음(대한민국정부, 2018a: pp.3-8)

- 3) 김효주 외(2017: p.17)
- 4) 박수범 외, 2014:p.13; 김영숙 외, 2016: pp.15-17; 감사원 2017: pp.94-97; 2018: pp.84-87
- 5) 대한민국정부(2012c: p.3; 2013c: p.3; 2014c: p.5; 2015c: p.4; 2016c; p.4; 2017c: p.4; 2018c: p.4; 2019c: p.4)

성인지예산제도의 설계와 운영행태에 대한 평가

▶ 성인지예산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보다 조직적 기반이 중요하고, 이보다는 주요 재정관리 단계별로 성평등 관점을 접목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평가 영역	평가지표	AHP 가중치 (A)	평가 득점 (B)	가중득점 (A×B)	AHP 가중치 (A)	평가 득점 (B)	가중 득점 (A×B)	만점
법적 기반	[1-1]관련법령의 체계성과 정합성	0.39528	3.29	1.30162			0.42422 (70.04%)	1.18580
	[1-2]성평등 관점의 국가재정관리 법제화 정도	0.60472	3.64	2.20030	0.12114	3.50192		



평가 영역	평가지표	AHP 가중치 (A)	평가 득점 (B)	가중득점 (A×B)	AHP 가중치 (A)	평가 득점 (B)	가중 득점 (A×B)	만점
조직적	[2-1]부처간 기능분담 및 권한책임 부여의 적정성	0.36847	2.03	0.74787	0.15.420	1 0 4010	0.30073	0.91725
기반	[2-2]성평등 정책총괄조정기능	0.51092	1.57	0.79963	0.15429	1.94913	(38.98%)	
	[2-3]정부출연연 연구역량	0.12061	3.33	0.40163				
	[3-1]성별영향평가의 적정성	0.57569	2.37	1.36342			0.73057 (48.07%)	1.51975
예산 편성 및 요구 단계	[3-2]성평등 관점의 예산편성지침 으로서 성인지예산지침의 중요성	0.20263	2.10	0.42633	0.30395	2.40358		
	[3-3]성평등 관점의 성과계획서 로서 성인지예산서의 중요성	0.22168	2.77	0.61383				
예산 심의 확정 단계	[4-1]성평등관점에서 국회 심의의 충실성	1.00000	1.62	1.62239	0.18345	1.62239	0.29763 (32.45%)	0.77145
	[5-1]성평등 관련 성과정보의 충실성	0.45119	2.09	0.94167				
예산집행 후 평가·통제단 계	[5-2]감사원 결산검사 및 국회 결산심사 시 성평등 관점 반영도	0.26773	1.73	0.46300	0.23716	2.05761	0.48798 (41.15%)	0.60507
	[5-3]성평등 관점의 재정사업 평가 실시 역량	0.28108	2.32	0.65294				

⊙ 성인지예산제도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분석

구분	행정부 조사	입법부 조사	전문가 조사		
조사대상	행정부 (중앙부처 소속) 국가공무원	입법부 및 관련기관 근무자 (국회상임위원회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직원 등)	(성인지예산제도 자문을 한 연구원,	여성정책 전문가 : 관련 연구, 토론, , 교수 및 여성정책 활동 수행 경험자)	
	700명				
표본수	성인지예·결산서 인지자 중 작성유경험자350명/비경험자350명	50명	50명	-	
	815명				
유효표본 수	(작성유경험자350명/ 비경험자465명)	54명	50명	-	
조사방법	온라(초점집단인터뷰			
표본추출 방법	기관별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사업 수에 따른 유의 할당 후 무작위 추출	기관별 랜덤 추출	해당 분야별 랜덤 추출	-	

[※] 본 조사는 기존 조사와 달리 대상자 측면에서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작성유경험자와 비경험자를 조사하였으며, 입법부 및 여성정책과 재정정책 전문가를 포함하여 조사함. 조사항목 측면에서는 전반적 인지 및 경험 여부는 물론 효과성 등 전반적인 평가, 제도설계 및 관행 등의 공통 항목과성인지예·결산서 작성 경험자가 응답하는 제도도입 전과 후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고도화된 정책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행정부의 경우 성인지예·결산제도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인식 및 평가(경험이 있는 표본과 경험이 없는 표본 비교분석)결과 여성정책 및 성평등 정책 업무담당경험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예산, 성과관리 업무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다소 긍정적,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이후 인식 및 평가(경험이 있는 표본)결과 성평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예산제도에 성별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평가



- ▶ 입법부(상임위원회 보좌관 및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공무원)의 경우 여성정책 및 성평등 정책예·결산 심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에 비해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동의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남. 심의 지원 이후 예산제도에 성별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제도가 본인의 자녀혹은 배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 ▶ 전문가의 경우 제도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추어 실질적인 정책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3. 정책제언

- 지난 10년간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되어 크고 작은,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음. 이러한 노력들은 당장 우리사회의 성차별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10년, 20년 후의 더 나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음
 - ▶ 형식적 제도와 현실적 운영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의 본질'과 '공정성'에 대해 주목하여 제도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중요도 및 현실화 정도를 고려하여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핵심 국가정책의 성평등 효과분석 실시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성인지적 재정운용방향이 포함될 수있도록 제도화
 - ▶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의 방향과 성평등 현황을 점검하고, 해당 사업 관련 사회·구조적인 성 불평등 현황과 정책수요자의 요구 분석을 충실히 시행하는 것. 그러므로 성평등 이슈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핵심 국가정책에 대해 성평등 효과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성인지적 재정운용방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
- 💿 🧵 현 법정서류인 성인지예산서, 성인지결산서의 질적 수준 제고
 - ▶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 변경-성별수혜분석결과 항목을 삭제하고,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서를 첨부(선행조건: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분석의 질 제고, 예산편성 전에 미 완료시 네가티브 인센티브 제공)
 - ▶ 또는 성과계획서에 성평등 목표를 추가하고, 관련 있는 사업만 별도 취합하여 성인지예산서로 제출
- 조직적 기반 보강
 - ▶ 기획재정부 성인지예산안 심사·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 여성가족부 성인지예산제도 지원운영과(가칭) 신설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 기능 확대·강화
 - ▶ 디브레인과 연계된 별도의 성인지예·결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성인지적 예산편성 강화 및 환류 과정 보강·개선

- ▶ 사업의 성평등 목표 유형화 및 합리적 목표 설정
- ▶ 예산수혜분석·평가 방법론 체계화
- ▶ 감사원의 성인지결산 분석 기능 강화
- ▶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 후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국가재정법」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의 개정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운용의 방향에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내용을 수록

📀 🛾 국회의 성인지예결산 심의 관련 역량 강화 및 영향력 확대방안 마련

-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성인지예·결산 전담팀 운영, 별도의 검토보고서 생성
- ▶ 국회예산정책처 성인지예·결산 분석보고서 보강

참고 자료

- 감사원(2017),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 감사원(2018),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 감사원 보도자료(2019.05.31.),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및 감사활동 결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별영향평가법, http://www.law.go.kr/법령/성별영향평가법 (인출일자: 2019.10.07.)
- 국회예산정책처(2017), 『대한민국 재정 2017』.
- 기획재정부(2009a, 2019a), 『2010년도, 2020년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 기획재정부(2018b), 『2019년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a),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8b), 『2018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 김영숙·이택면·박수범·김효주·장윤선·권도연·김병권·김해람(2016),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종합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김효주·이택면·김영숙·장윤선·문희영·김병권·김해람(2017),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종합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대한민국정부(2018a),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 대한민국정부(2014b, 2015b, 2017b), 『2015, 2016, 2018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 대한민국정부(2012c-2019c), 『성인지결산서(2010-2018회계연도, 각년도)』
- 박수범·조선주·김영숙·정가원·장윤선·권희정(2014), 『2013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종합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여성신문(2017.11.29.), "광주, 전국 최초 '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환영'",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331(인출일자: 2019.12.11.)
- 이택면(2017), "OECD 주최 성인지예산 전문가 회의 참관기", 젠더리뷰 여름호, 제45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윤선·박수범·김병권·조소영·박윤(2018),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Ⅳ):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차인순(2009), "성인지 예산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Vol. 76 No.1 pp.143-175.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2019), 내부자료(부처 보고자료).
- OECD(2017a),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Directorate: Gender Budgeting in OECD countrie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2016/3.

주관부처: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관계부처: 전 중앙행정기관

